

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조성태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4년 11월 15일
-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3. 제안이유

-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,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, 대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범위를 기존 “한 자녀”에서 “해당년도 한 자녀”로 확대함(안 제7조).
- 대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의 기준을 기존 “고등학교 공납금(최고금액)의 120퍼센트”에서 “200만원 이내”로 개정함(안 제11조).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범위를 “해당년도 한 자녀”로 확대하고, 대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의 기준을 “200만원 이내”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- 안 제7조는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유공자 장학생, 우등생 장학생, 특기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기존에는 새마을지도자 한 명에 대하여 한 자녀로 한정하여 선정하였으나,
 - 이를 새마을지도자 한 명에 대하여 해당년도 한 자녀로 확대하려는 것으로,
 - 학령인구 감소로 선발대상 인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고,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적 부담 증가도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 안 제11조는 대학교 장학생 장학금액 산정기준을 기존에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(최고금액)의 120%로 하고 있었으나,
 - 이를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려는 것으로,
 - 충북지역 고등학교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고등학교 공납금을 기준으로 대학교 장학생 장학금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 정액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 - 한편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, 세종, 강원, 충남, 전남, 경북, 경남 등 7개 광역단체는 조례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대학교 장학생 장학금액을 200만원 이내의 정액 형태로 정하고 있음.

- 안 제9조는 도 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기간을 기존 “매 학기 개시 30일 이내”에서 “1학기 개시 후 90일 이내”로, 안 제12조는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“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”에서 “장학생 선정 후 50일 이내”로 절차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그밖에 제5조 및 제1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.